

의안번호	제 53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0월 일 (제 295 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양희 의원
발의연월일	2010년 10월 8일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3
----------	----

발의연월일 : 2010년 10월 8일

발의의원 : 김양희 의원

찬성의원 : 최병윤 · 김영주 · 박종성
유완백 · 정지숙 · 장선배

1. 제정사유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충청북도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대상의 범위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 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제2조,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2조,
제18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10. 9. 16 ~ 10. 7(의견 없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해소 사업
7.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8.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도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여성환경국장, 자치행정과장, 여성정책과장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3.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결혼한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

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